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424

발의연월일: 2024. 8. 30.

발 의 자:임종득·김예지·이헌승

인요한 • 조승환 • 김기웅

이상휘 • 우재준 • 박형수

윤한홍 · 김상훈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테러 전담조직을 둘 수있도록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테러 전담조직의 운영을 위해서는 물자확보, 대테러 장비의 운용을 위한 재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, 전담조직을 둔 관계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.

이에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필요한 예산 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정하는 한편, 전담조직을 둔 관계기관에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테러로부터 국가 및 공공 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4항 및 제8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는 관계기관 중 국가기관 이외의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두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전담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	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		
책무) ① ~ ③ (생 략)	책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		
	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		
	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		
	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		
	한다.		
제8조(전담조직의 설치) ① (생	제8조(전담조직의 설치) ① (현행		
략)	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② 국가는 관계기관 중 국가기		
	관 이외의 기관의 장이 제1항		
	에 따라 전담조직을 두는 경우		
	해당 기관에 전담조직의 운영		
	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		
	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		
	<u>할 수 있다.</u>		
<u>②</u> (생 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		